

## 8. 壁體의 遮音構造의 指定基準

建設交通部告示 第1995-191號 1995. 6.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차음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차음구조를 말한다.
2. “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 또는 차음구조로 시공하기 위한 자재의 생산·제조 또는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지정차음구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를 말한다.
4. “신청자”라 함은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로서 이 기준에 의한 차음구조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차음구조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①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별표 1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음기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KS F 2808(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측정 방법)에 의한다.

③차음구조의 시험은 국립건설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 또는 시험소장이 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다.

④차음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제작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기관의 지시·감독에 따르되 시료채취 방법은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험기관은 시험비용 기타 차음구조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험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

협기관은 시험비용 기타 차음구조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험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차음구조의 지정신청)** ①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소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로서 동일한 구조·성능 및 품질의 차음구조(차음구조로 시공하기 위한 자재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차음구조의 심사)** ①시험소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신청된 구조의 차음성능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자본·시설등에 관한 사항

②시험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음향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험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시험소장은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여 이를 당해 신청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제6조(차음구조의 지정 및 표시)** ①시험소장은 신청차음구조에 대한 제3조 제2항에 의한 시험결과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가 차음구조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음구조로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험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차음구조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차음구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차음구조에 차음구조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지정차음구조가 아닌 제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차음구조지정의 효력)** 신청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차음구조지정의 효력은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며,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정차음구조의 사후관리)** ①제조업자는 차음구조를 지정받는 날로부터

매 5년마다 당해 5년이 종료되기전 6개월이내에 지정차음구조에 대하여 시험소 또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차음구조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차음구조시험성적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소장은 제출된 차음구조시험성적서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조업자는 지정차음구조를 제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 및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그 검사 및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자재 또는 부품의 수입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4.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보고·검사) ①제조업자는 매년도 지정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과 품질관리상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시험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음구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험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소장은 년1회이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자체품질관리상태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험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자체품질관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지정차음구조 제조과정을 직접조사하게 하거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음구조 시험을 실시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및 정지) ①시험소장은 차음구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년 2회이상 차음구조의 지정을 정지당한 경우
2. 지정차음구조의 생산 또는 판매가 중지된 경우
3. 차음구조의 지정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정지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정지된 차음구조를 건축물에 사용한 경우
4. 차음구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반납한 경우
5. 차음구조의 지정을 받기 위한 서류

또는 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작 또는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②시험소장은 차음구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음구조 시험성적서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적합하여 소정의 성능시험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자체 품질관리상태가 부적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차음구조의 품질확보와 관련한 시험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시험소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차음구조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시험소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정에 의하여 차음구조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차음구조를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기준의 제정) 시험소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폐지) 건설부고시 제341호('90.6.14.)를 폐지한다.

[별표 1]

### 차음구조의 성능기준

중심주파수(Hz)	음향투과손실(dB)
125	39
500	45
2000	55

[별표 2]

지정신청서 첨부도서

신청도서	기 재 사 항
1. 차음구조 설계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 건축재료명등)</li> <li>• 재료설명서(구성재료의 재질, 성능등)</li> <li>• 시방서(시공방법등)</li> <li>•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2. 신청자의 영업개요	<p>가. 제조자의 및 공급업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의 연혁 및 실적</li> <li>-자본금액</li> <li>-종업원수</li> <li>-제조시설(공급업자의 경우는 불필요)</li> </ul> <p>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제조업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업규격표시품 허가증 사본</li> </ul> <p>다.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주</li> <li>-건축물의 위치</li> <li>-건축물의 연면적</li> <li>-공사기간</li> </ul>
3. 품질관리 설명서	<p>가. 차음구조의 품질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차음구조의 물리적성능 및 기타</li> </ul> <p>나. 차음구조의 공장검사기준(제조업자의 경우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검사 관계내용</li> <li>-시험설비 및 기타</li> </ul> <p>다. 현장시공 검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시공시방관계 검사내용 및 기준</li> </ul>

[별표 3]

지정차음구조의 표시

국립건설시험소장 지정	5~10cm
(지정번호)	
품목명	
회사명	
5~10cm	

[별표 4]

품질검사필증

품질검사필증	10~15cm
(지정번호)	
(차음성능)	
(회사명)	
(검사일)	
(검사자)	
8~12cm	